

'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도시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등포區政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區政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審議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94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3. 11. 29. (월) ~ 12. 1. (수)까지 (3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각호 해당기관
 - 도시정비국, 건설국
 - 동사무소

4. 감사위원 편성

위원장	간사	위원	사무보조직원
김명환	안주영	권혁필, 김동기, 배기환 심정기, 최규락, 이증식 이윤중, 이용주, 양운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1명) 속기사 (1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자	감사 대상 기관	장소	감사 방법	비고
'93. 11. 29. ~ '93. 12. 1. (월~수) 10:00~	도시정비국	영등포구청	현황보고 자료확인	
	건설국	감사실	질의 답변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는 현지확인 감사		

4 (第21回—都市建設委員會第1次)

6. 주요감사사항

대상기관	주요감사사항
주택과	1. 2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 승인에 관한 사항 2. 민간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 관리, 용자금회수 사항 3. 무허가 건물에 관한 진정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도시정비과	1.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사항 2.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지역교통과	1. 지역교통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개인택시 면허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건축과	1.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2.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관계 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지적과	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사항 2. 축척 변경 및 불부합지의 조사처리에 관한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건설관리과	1.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 2.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토목과	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3. 가로등, 보안등 시설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하수과	1. 하수도 시설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재심청구 심의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공원녹지과	1. 공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1993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그 추진실적
- 나. 1993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 다. 1993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
- 라. 1993년도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마. 1993년도 각종 민원(진정, 청원, 기타) 처리 상황
-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 모든 자료는 15부씩 제출을 요함

8. 감사요령

가. 감사자료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은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자료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나. 증인등의 출석요구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한다.
- (2)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

다. 감사진행순서

- (1)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위원장) —의사봉 3타—
- (2) 위원장의 인사
- (3)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
 - 집행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현황설명
- (4) 질의 및 답변
- (5)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 (6) 감사종료 선언 —의사봉 3타—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1) 각위원은 감사일일보고서를 익일 09:00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
- (2)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위원회별로 본회의에 회부한다.
- (3)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관, 실시대상기관, 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 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등을 포함토록한다.